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정의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용어 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0.4. ~10.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군”을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하여 그”를 “한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을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으로, “각호에 제시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으로, “부가한 지령서를”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로, “발부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보조금의 지급은”을 “보조금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업년”을 “사업 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를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교부결정의”를 “그 교부결정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을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으로, “기타 시설을”을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부분이외”를 “부분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취소한 경우에 이를”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를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로 한다.

제15조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시되었거나”를 “시작 되었거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17조제5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군비를</u>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보조금”이라 <u>함은 군</u>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u>자금</u>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u>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제29조제5항에 따라</u>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각 호</u>-----.</p> <p>1. ----- <u>함은 평창군</u> (이하 “<u>군</u>”이라 한다) ---- ----- ----- ----- ----- ----- <u>자금</u>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u>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 5. (생략)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조례로 -----
-----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
----- 한하여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제1항----- 각
호-----
----- 붙여야 -----.

1. ~ 4. (현행과 같음)

5.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사용방법	5. ----- <u>필요한</u> ----- -----
6.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u>충당되는</u>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 <u>필요한</u> ----- ----- ----- ----- -----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9. <u>기타</u> 군수가 정하는 사항	9. <u>그 밖에</u>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u> 경우에는 다음 <u>각호에 제시하는</u>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 <u>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u> ----- <u>각 호의</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u> 경우에는 그 조건을 <u>부가한 지령서를</u>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u>발부한다</u> .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u>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u> ----- ----- <u>포함한다)</u> 을 지체 없이 ----- <u>통지하여야 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부방법) <u>보조금의 지급</u>	제9조(교부방법) <u>보조금 중</u> -----

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그 밖의 -----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
-----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
----- 인정할 때 -----

----- 그 교부결정의 -----

-----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

----- 각 호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

2.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 주요시설 등을 사용 하거나 -----

3. ----- 필요한 ----- 부분 외 -----

③ 제1항에 따라 -----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을 -----.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독) ----- 자에게 -----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3.·4. (생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로 인해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 삭 제

-----.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
----- 각 호
의 어느 하나-----
----- 지체 없이
-----.

1. ----- 시작되었거나 -----

3.·4.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

-----.

1.·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 삭 제

<p>5. <u>허위 또는 부정</u>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p>	<p>5. <u>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u> ---- ----- -----</p>
<p>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하거나 <u>검사거부</u> 또 는 <u>허위보고</u>를 하였을 때</p>	<p>6. ----- ----- <u>검사 거부</u> <u>또는 거짓 보고</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규칙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연락처	(033) 330 - 2216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公款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